

# 충남삼성고등학교 용의복장세칙

[시행 2014.3.1.] [2016.2.1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남삼성고등학교 용의복장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의 용의복장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격 있는 학생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7호, 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 및 본교의 「학교생활규정」 제18조와 제19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 제2장 교복 규정

제4조【교복의 구성】① 본교의 교복은 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한다.

② 본교의 교복은 교복의 특성에 따라 정장, 캐주얼, 체육복, 활동복으로 구분한다.

③ 동복 정장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복 정장 셔츠 (코드: #111)
2. 동복 정장 재킷 (코드: #112)
3. 동복 정장 바지 (코드: #113)
4. 동복 정장 치마 (코드: #114)
5. 넥타이 혹은 리본 (코드: #115)
6. 동복 정장 조끼 (코드: #117)

④ 동복 캐주얼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복 캐주얼 셔츠 (코드: #121)
2. 동복 캐주얼 바지 (코드: #123)
3. 동복 캐주얼 치마 (코드: #124)
4. 동복 캐주얼 코트 (코드: #126)
5. 동복 캐주얼 가디건 (코드: #128)

⑤ 하복 정장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 정장 셔츠 (코드: #211)
2. 하복 정장 바지 (코드: #213)
3. 하복 정장 치마 (코드: #214)

⑥ 하복 캐주얼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 캐주얼 셔츠 (코드: #221)
2. 하복 캐주얼 바지 (코드: #223)
3. 하복 캐주얼 치마 (코드: #224)

- ⑦ 춘추복 정장의 구성은 동복의 제2호(코드: #112)를 제외한다.
- ⑧ 동복 체육복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복 체육복 상의 (코드: #132)
  2. 동복 체육복 하의 (코드: #133)
- ⑨ 하복 체육복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 체육복 상의 (코드: #232)
  2. 하복 체육복 하의 (코드: #233)
- ⑩ 동복 활동복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복 활동복 후드집업(코드: #141)
  2. 동복 활동복 맨투맨(코드: #142)
- ⑪ 하복 활동복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 활동복 상의(코드: #241)
  2. 하복 활동복 바지(코드: #243)

제5조【신발】① 본교에서 착용 가능한 신발은 구두, 운동화, 실내화이다.

- ② 교복 구두는 검은색 혹은 갈색 계열의 단정한 단화로 굽 높이는 3cm이하로 제한한다.
- ③ 실내화는 슬리퍼를 포함하되 지나치게 단정하지 못한 것은 금지한다.

제6조【교복 착용 기준】① 본교의 일과 시간은 정규수업과 방학 중 보충 수업 기간의 등교(07:20)부터 석식 이전(18:30)까지로 한다. 나머지 시간은 일과후로 한다.

- ② 본교의 교복 착용 공간은 교문과 외각 담장 안쪽의 교정 전체이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으로 예외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등·하교 길, 외출·외박 등 학교 일정과 관련 있는 공간에서는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복】① 수업일과 휴일 여부에 상관없이 본교의 재학생은 교정 및 등·하교시에는 제4조에서 지정된 교복 이외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다.

-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기숙사 취침
  2. 흑한기
  3.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보건교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4.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우
  5. 수업에 필요한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계절별 교복 착용】① 동복, 춘추복, 하복의 착용 시기는 해당 연도의 기상 상황이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② 예외적인 기상 상황이나 천재지변(폭우, 폭설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으로 교복 착용에 대한 원칙을 임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일과 시간의 교복 착용】① 제6조 1항의 일과 시간에는 요일별 드레스코드에 맞게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 ② 드레스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장 : 제4조 3항 혹은 5항의 정장 + 제5조 2항의 구두
2. MIX : 정장 셔츠나 캐주얼 셔츠, 하복 활동복 상의(#111, #121, #211, #221, #241)를 반드시 착용하고 나머지 정장, 캐주얼, 활동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착용 + 제5조 2항의 구두 혹은 운동화
- ③ 요일별로 적용되는 드레스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목요일: 정장
  2.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MIX
- ④ 학교에 중요한 행사(GA, 입학식, 졸업식, 선후배 상견례 등)가 있을 경우는 드레스코드와 관계 없이 정장 및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

제10조【일과후 시간의 교복 착용】① 제6조 1항의 일과후 시간에는 제9조 2항의 MIX를 적용하되, 제5조 3항의 실내화 착용이 가능하다.

② 일과후 시간에 기숙사에서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되,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제11조【체육복】① 체육복은 일과시간 및 일과후 시간에 관계없이 체육 수업 및 체육 활동 시간에만 착용이 가능하다.

② 체육복을 입을 때 필요한 경우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제12조【혹한기 외투 착용】① 혹한기 혹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추위가 심한 경우에는 사복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② 난방이 실시되는 곳에서는 사복 외투를 탈의해야 한다.

제13조【외출, 외박 및 현장체험학습】① 외출, 외박 시 복장은 제9조 2항의 MIX를 적용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시 복장은 해당 행사의 취지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조【명찰】① 수업일과 휴일 여부에 상관없이 본교의 재학생은 교정에서 왼쪽 가슴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② 충분이 인식이 가능하도록 왼쪽 가슴에 이름이 각인되거나 프린트된 경우에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기타】① 교복은 판매 이후 허용된 범위 이외의 임의적인 변형을 금지한다.

②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은 금지한다.

③ 정복의 경우 셔츠는 하의 속에 넣어 입어야 한다.

④ 교복에 관한 분쟁은 제21조 용의복장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교복소위원회】① 본교의 교복 관련 사항은 교복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 교복소위원회는 본교 '교복소위원회규정'을 따른다.

## 제3장 두발 규정

제17조【두발 규정】① 두발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깔끔한 모양을 유지한다.

- ② 무스, 젤, 왁스 등 헤어제품 사용을 금한다.
- ③ 어떠한 경우라도 염색, 파마 등 화학 약품을 사용한 두발의 변형을 금한다.
- ④ 머리의 특정 부위에 상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하에 적절한 머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 ⑤ 두발에 관한 분쟁은 제21조 용의복장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제4장 화장 규정

제18조【화장 규정】① 제6조의 교복 착용 공간에서는 화장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 ② 색조 기능이 없는 스킨, 로션, 선크림 등 피부의 보습 및 관리를 위한 화장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색조 화장은 일절 금한다.
- ③ 교사는 검은 면봉, 클렌징 티슈 등으로 화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색조 화장품이 묻어나는 경우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④ 화장에 관련한 분쟁은 제21조 용의복장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제5장 기타 규정

제19조【양말 규정】① 양말은 기숙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② 스타킹은 살색, 커피색, 검정색의 무늬 없는 것만을 착용해야 한다.

제20조【장신구 규정】① 모든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등)는 착용을 금지한다.

- ② 써클렌즈, 칼라렌즈 등 시력교정 목적 이외의 렌즈 착용은 금지한다.

## 제6장 용의복장 위원회

제21조【용의복장 위원회】① 본교의 용의복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용의복장 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용의복장 위원회는 본교 교사 대표 2인, 학부모 대표 1인, 학생 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용의복장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생생활부장은 용의복장 위원회를 열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④ 용의복장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학생은 분쟁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의복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